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513호
- 나. 발 의 자 : 문성호 의원(찬성자 9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6년 2월 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6년 2월 12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내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하거나 혹은 현재 활용 가능한 시설에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의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실내·외 시설 이용 보장 근거 마련(안 제16조제10호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윤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 청소년을 위한 실내외 시설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생활체육 활동이 증진되도록 발의되었음.

나. 청소년 체육활동 현황

-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<2025 국민생활체육조사 보고서>는 청소년 중 다수를 차지하는 10대의 생활체육 참여 비율¹⁾이 2024년 45.9%에서 2025년 43.2%로 전년 대비 2.7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이는 국민 전체의 생활체육 참여 비율이 2024년 60.7%에서 2025년 62.9%로 전년 대비 2.2%p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임.

- 또한 10대의 생활체육 참여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도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는데, 청소년 생활체육 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권 인근에 접근성 높은 시설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살펴보면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공공 또는 민간체육시설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지만, 10대의 경우 학교체육시설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, 이는 청소년 생활체육 증진에 있어 다수가 활용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 활성화를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1) 전체 중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

- 아울러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‘청소년’으로 규정하고, 같은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.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관 21개, 청소년특화시설 5개 등 총 28개소의 청소년활동시설을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고, 해당 시설들은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단체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.

다만 현행 법령상 청소년의 범위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우대 이용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청소년 생활체육 진흥(안 제16조제10호)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	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0. <u>청소년의 체육진흥을 위한 실내외 시설 지원</u>
10. (생 략)	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 생활체육 진흥에 있어 청소년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임.
- 「생활체육진흥법」은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²⁾를 명시하고 있고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³⁾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현행 조례로 법제화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- 다만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명시한 동 개정안과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고,
- 당초 동 개정안의 취지가 청소년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발의되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을 제안드립니다.

< 수정 의견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 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	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-- -----	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-- -----

- 2) 제3조(국민의 생활체육 권리)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.
-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.
- 3) 제8조(지방 체육의 진흥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p>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10.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청소년의 체육진흥을 위한 실내외 시설 지원</u></p> <p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</u></p> <p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

의안번호
3513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주요내용	문성호 의원 (교통위원회)	2026. 2. 9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추진경과	<제안이유> ○ 서울특별시 내 청소년을 위한 체육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하거나 혹은 현재 활용 가능한 시설에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<주요 입법 요지> ○ 청소년의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실내·외 시설 이용 보장 근거 마련 (안 제16조제10호)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) / 수정가결(○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동의함. ○ 다만, 해당 조문에 제안 취지를 명확히 담고, 기존 조문의 각호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- 발의(안): 청소년의 체육진흥을 위한 실내외 시설 지원 → 수정(안): 청소년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				
대응방안	○ 문성호 의원 통화 완료(2026.2.13.)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				
향후계획					
담당부서	체육진흥과	팀장	함혜정(☎2133-2732)	담당	이지은(☎2133-2735)